

정부출연기관,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개인명의 특허권 - 국가 R&D, 국가연구개발사업,

국책과제의 결과물을 개인명으로 특허등록한 사실 적발 - 인사징계 해임처분 적법: 서울

고등법원 2019. 4. 19. 선고 2018나2068118 판결



『원고는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자로서 해당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, 해당 발명의 특허권을 취득한 것을 두고 타인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, 따라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 을 1호증, 을 22호증, 을 23호증, 을 24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 제386호)에 따라 주식회사 K과 L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, 위 협약서에 따르면 '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(제9조 제2항)'고, '주식회사 K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~(중략)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(제9조 제6항)'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, 주식회사 K은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데, 원고는 E에 근무하면서 위 과제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, K은 이 사건 과제의 결과인 해당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후 피고의 전산망에 연구과제의 성과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에게 위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사실, 피고 정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, 피고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,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원고로서는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취득하였다 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에게 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,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할 무렵인 2017. 7. 20.까지 위 특허권 지분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,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고, 원고는 직무관련자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대가 없이 직무발명의 성과인 이 사건 특허권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』

### 1.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 (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·관리 및 활용촉진)

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, 연구개발 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.**

(단서 생략)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2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20조 (연구개발성과의 소유)

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**연구기관의 단독 소유**로 하고,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. 다만,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.

### 3. 처리규정(훈령) 제36조 (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)

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주관연구기관**(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

말한다)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(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)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.

1.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

2.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

우

3. 장관이 주관연구기관(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)과 참여기관

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

경우

#### 4.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

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(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

위탁받은 기관의 장)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(연구개발성과를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출하

려는 것을 말한다)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

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

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

다.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

여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으로 정한다](#).

## 5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) 제22조 (기술료의 징수)

① 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. 다만, **법제1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**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,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**중소기업**: 정부출연금의 **10** 퍼센트

2. **중견기업**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): 정부출연금의 **30** 퍼센트

3. **대기업**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): 정부출연금의 **40** 퍼센트

## 6. 처리규정(훈령) 제38조 (기술료의 징수)

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. 다만,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**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**

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.

1. 중소기업: 정부출연금의 10%

2. 중견기업(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): 정부출연금의 30%

3. 대기업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): 정부출연금의 40%

## 7. 처리규정(훈령) 제39조 (기술료의 사용)

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**영리법인**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에 포함한다)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1. **전문기관에의 납부**(중소기업: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, 중견기업: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, 대기업: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)

2. 제1호 외의 금액: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, 연구개발 재투자, 기관운영경비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

이공계 변호사/변리사, 발명자 중심 보상청구소송, 다양한 사건, 소송비용경감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